

# 사회복지법인 송원 이사회회의록

- 1) 회의 통보일자 : 2021년 06월 23일
- 2) 회의 개최일시 : 2021년 06월 30일 11:20
- 3) 회의 개최장소 : 다자간 영상통화(줌)
- 4) 회의 종류 : 임시 이사회
- 5)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 이성근  
이 사 : 장회원, 하윤석, 남정숙, 조홍래
- 6) 안 건 : 1) 법인 산하시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  
2) 2021년 부산희망드림센터 예산안 승인 건  
3) 송원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 건

##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 생략) 이사 7분의 5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 ▶ 안건 1) 법인 산하시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  
2) 2021년 부산희망드림센터 예산안 승인 건  
3) 송원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 건

대표이사 이성근 : (안건상정에 이어 의안 설명에 들어가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 2021년도 법인 산하시설인 송원정신요양원과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시설장인 이사님들께서 시설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원정신요양원의 2021년 추경예산안을 장회원 이사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다.

이 사 장회원 : 예, 이번 송원정신요양원 추경을 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추가 교대인력 확보가 필요하여 당초 예산1,731,507천원에서 인건비가 74%증액되어 1,827,31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사업 및 후원금 증액으로 예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남정숙 : 다음으로 부산희망종합지원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당초 예산 977,236천원에서 13,634천원이 증액된 990,870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비 반환금의 이월금과 응급잠자리 동절기 급식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추경안에 대해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 하윤석 : 네. 이사님들의 추경예산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시설운영으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네, 나눠드린 시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입니다. 다음은 2021년 부산희망드림센터 예산(안) 승인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산희망드림센터 예산(안)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산희망드림센터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규모는 159,545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111,525천원외 아웃리치활동, 지역네트워크, 홍보사업등 프로그램사업비로 15,11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하윤석 : 대표이사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산희망드림센터는 신규 사업계획, 지역 사회 연계등 센터 운영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산하시설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희망드림센터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승인 바랍니다.

이 사 남정숙 : 송원정신요양원,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희망드림센터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관·항·목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원 안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을 승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사 조홍래 : 네. 저도 남정숙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부산희망드림센터는 노숙인시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사 하윤석 : 조홍래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장회원 : 하윤석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다음 안건으로 송원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 안입니다. 하윤석 이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하윤석 : 송원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편 복무관리 규정

제55조(정년 및 재고용) ②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1. 1월에서 6월까지 : 6월 30일

2. 7월에서 12월까지 : 12월 31일

③ 시설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이상 재고용할수 있다. 다만,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속 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 변경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남정숙 : 정년 및 재고용에 운영규정이 변경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잘 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송원노인요양원 운영규정 변경안에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운영규정 변경 안에 대해 승인 바랍니다.

이 사 조홍래 : 네. 저도 남정숙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용안정은 직원 복지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 장회원 : 조홍래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하윤석 : 장회원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이성근 : 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안통과를 선언하고, 폐회를 구하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2021. 06. 30. 11:50

사회복지법인 송 원

대표이사 : 이 정근

이 사 : 장 회원

남정숙

조홍래

하윤석

